

1. 개정이유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난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초기에 신속한 지원 추진여부가 재외동포사회의 위난 극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바, 재외공관의 장이 재난 발생 즉시 재외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의 주체에 ‘재외공관의 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 위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위난 지원을 도모함(안 제4조의2)
- 나. 재외공관의 장의 신청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5조)
- 다. 지원물품 및 지원금 교부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단체와 재외공관의 교부를 각각 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 라. 지원에 대한 재외공관의 결과보고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외공관의 장의 지원신청)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 발생 시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관 현황
2. 신청 사유
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
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
2. 재외동포단체 및 현지 동포사회의 자구노력 사항

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

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5. 주재국의 종교·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4조의2”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교부)”를 “(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동포단체 교부)”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공관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

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집행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재외공관에 알려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한다.

③ 재외공관은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집행 또는 지원 물품의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의2(재외공관의 결과보고) ① 제6조의2에 따라 지원금 또는 물품

을 교부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실적

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

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차후 해외 위난을 대비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4조의2(재외공관의 장의 지원신청)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 발생 시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관 현황</u> <u>2. 신청 사유</u> <u>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u> <u>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u> <p><u>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u> <u>2. 재외동포단체 및 현지 동포 사회의 자구노력 사항</u>

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

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5. 주재국의 종교·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제5조(지원 여부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교부)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지원 여부 결정) ① 제4조 및 제4조의2-----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동포단체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공관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집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재외공관에 알려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

<신 설>

관에 신청 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한다.

③ 재외공관은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집행 또는 지원 물품의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의2(재외공관의 결과보고)

① 제6조의2에 따라 지원금 또는 물품을 교부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실적
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
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지

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차후 해외 위난을 대비하여 보관한다.